본 경정결정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14

대 전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결 정

사 건 2016구합50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

원 고 A

피 고 1. [redacted]시장
2. [redacted]시장
3. [redacted]군수
4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5. [redacted]군수
6. [redacted]군수
7. [redacted]군수

주 문

위 당사자 간의 2016구합508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6,057,100원을 25,878,580원으로, [별지 1]의 10번 취득세(가산세포함) 부분 중 536,490원을 536,430원으로, [별지 1]의 세목별 합계 부분 중 23,719,050원을 23,718,990원으로 각 경정한다.

이 유

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본 경정결정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14

2017. 1. 25.

재판장 판사 심준보

판사 조형목

판사 김선화